

# BGF리테일 기업지배구조현장

## 전 문

BGF리테일(이하 '회사'라 한다)은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이러한 경영철학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본 헌장에 따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의 감독 아래 경영진은 책임 경영을 수행하며,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 제1장 주주

### 제1조 (주주의 권리)

1. 주주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2.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3.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 주주가 자유의사에 따라 주주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1. 회사는 보유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2.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등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 제3조 (주주의 책임)

1. 주주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이사회

### 제4조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2.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

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1.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가 운영되기에 충분한 규모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이사회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둔다.
3.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 다양성을 지닌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4. 회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주주가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받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 (사외이사)**

1.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사외이사는 필요하면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3.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한다.

#### **제7조 (이사회 운영)**

1.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둔다.
3. 이사회는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보관한다.
4. 이사는 필요하면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다.

#### **제8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회 내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권한과 관련한 내용은 명문화하여 규정한다.
3.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상 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제9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이사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 (이사의 책임)**

1.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또한 이사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이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기업에 최선의 이익을 위해 충실한 의무를 갖고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러한 이사의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3.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1조 (평가와 보상)**

1.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한다.
2.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제3장 감사기구**

#### **제12조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등 법령과 정관이 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3.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회는 경영 또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 분기 1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는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보관한다.

#### **제13조 (외부감사인)**

1.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한다.

3.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감사대상기업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감사 대상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5.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이해관계자

### 제14조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1. 회사는 주주, 직원, 고객, 파트너,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직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4.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5.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
6.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7.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 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 제15조 (공시)

1.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2.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전달 시스템을 갖춘다.
3.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부칙

### 부칙(2021.07.21.)

이 현장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